

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 제 99 차 정기이사회 의사록

1. 회의개요

(1) 일시: 2022 년 9 월 22 일 (목요일) 16:00 - 18:30

(회의소집 통지일: 2022 년 9 월 15 일 목요일)

(2) 장소: 아름다운가게 회현본부 1 층 그물코룸 (서울 중구 소공로 34)

(3) 참석인원: 총 10 명 (이사 12 명 중 9 명, 감사 2 명 중 0 명)

- 참석 이사: 박진원, 장윤경, 박세훈, 문보경, 임혜선, 정귀옥, 박현정, 장승권, 이해옥
- 불참 이사: 김효진, 이병남, 이계양

(4) 진행

- 의장: 박진원 이사장
- 사회 및 발표: 김원섭 전략기획실장
- 기록: 김민준 간사
- 배석: 최수영 서울사업국장, 박종범 사업지원국장, 나눔사업팀 신한결 팀장(발표)
홍보팀 이해라 팀장(발표)

2. 회의내용

(1) 개회선언

이사장 박진원은 재적이사 12 명 중 9 명의 이사가 회의에 참석하여 99 차 정기이사회가 성사되었음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하다.

(2) 전차의사록 처리

- 의결 사항 4 건

[의안 제 1 호] 신임 상임이사 선임 건

[결정사항] 장윤경 지원자를 아름다운가게 신임 상임이사로 결정.

[의안 제 2 호] 정관내규개정위원회 운영 및 위원 선정 건

[결정사항] 정관내규개정위원회 재개 및 해당 위원으로 이해옥 이사의 연임을 승인.

[의안 제 3 호] 이사회 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회별 위원 선정 건

[결정사항] 운영위원회 이사 위원으로 이계양 이사와 정귀옥 이사를 선임

상설심의기구 이사 위원으로 문보경 이사를 선임

나눔사업 개선 소위원회 이사 위원으로 장승권 이사와 이계양 이사 및 임혜선 이사로

선임하며 위원장은 장승권 이사로 선임

사무처 조직구조 개선 소위원회 이사 위원으로 박세훈 이사와 정귀옥 이사 및 상임이사로

선임하며 위원장은 박세훈 이사로 선임

[의안 제 4 호] 2022 년 급여 인상 및 인건비 현황 보고

[결정사항] 2022 년 급여인상 승인

● 보고 사항 4 건

[보고 제 1 호] 상설심의기구 회의결과_2022.06.17

[보고 제 2 호] 홍보 진행 현황 및 20 주년 기념사업 계획 보고

[보고 제 3 호] 업사이클링팀 공간 이전 건

[보고 제 4 호] 상반기 업무 보고

98 차 전차의사록을 김원섭 실장이 보고 하고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다.

(3) 의결사항

[의안 제 1 호] 임원추천위원회 회의 결과 승인 건_ 연임 심의

[결정사항] 최호윤 감사의 연임 승인.

[의안 제 2 호] 정관내규개정위원회 회의 결과 승인 건_ 정관내규 개정 심의

- 주요 의견

[정관 개정안 주요 의견 및 논의결과]

- 최호윤 감사의 의견서 및 정관내규개정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[정관] 제 3 조부터 제 38 조까지의 개정 여부를 논의하다.

- '제 1 장 총칙, 제 3 조 사업' 관련 의견

- 참여자의 욕구변화 및 시대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친환경 목적사업 추가 승인을 결정하다.

- '제 3 장 기구, 제 1 절 임원, 제 8 조 임원의 구성' 관련 의견

- 정관내규 개정안에 임원의 구성을 변경하는 개정내용을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였고 찬성 2 표 반대 7 표로 정관내규 개정안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다.

- '제 3 장 기구, 제 1 절 임원, 제 10 조 임원의 선임과 해임' 관련 의견

- 본 조 4 항의 삭제 승인을 결정하다.

- '제 3 장 기구, 제 1 절 임원, 제 11 조 이사장' 관련 의견

- 이사장은 이사회 의결사항 집행에 관하여 관리감독 권한이 있다는 개정 조항의 승인을 결정하다.

- '제 3 장 기구, 제 1 절 임원, 제 12 조 이사' 관련 의견

- 이사는 전략적 사고, 인적자원, 전문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, 재정적 기여 등을 통해 아름다운가게의 미션달성에 기여한다는 신설조항에 대해 승인을 결정하다.

- '제 3 장 기구, 제 1 절 임원, 제 13 조 상임이사' 관련 의견

- [기준 안] ①이사회는 제 10 조 제 4 항에 의한 상근하는 임원 중 1 인을 상임이사로 둘 수 있다.

상임이사는 내규에 정한 절차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선임한다.

[수정 안] ①이사회는 1 인의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. 상임이사는 내규에 정한 절차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선임한다.

- 개정안 문구 중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한 수정안의 승인을 결정하다.

- '제 3 장 기구, 제 1 절 임원, 제 14 조 감사' 관련 의견

- 내용은 현행과 동일하며, 조직에서의 직책 순서를 고려한 조항 순서 개정안의 승인을 결정하다.

- '제 3 장 기구, 제 2 절 명예임원, 제 15 조 명예임원의 종류와 임기 등' 관련 의견

[기존 안] ③ 명예임원은 이사와 사무처, 명예임원의 추천을 받아 상근임원이 추대하고 이사장이 임명한다.

[개정 안] ③ 명예임원은 이사와 사무처, 명예임원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.

- 추천과정의 중복을 삭제한 개정안의 승인을 결정하다.

- '제 3 장 기구, 제 3 절 이사회, 제 17 조 이사회 구성 및 지위' 관련 의견

- [기존 안]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
[개정 안] 정관 및 내규 변경에 관한 사항

- 개정안의 승인을 결정하다.

- '제 3 장 기구, 제 3 절 이사회, 제 18 조 이사회 소집' 관련 의견

- [기존 안]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7 일전에 회의 안건을 명시하여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 이사전원이 집회하고 또 전원이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[개정 안]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5 일전에 회의 안건을 명시하여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 이사전원이 집회하고 또 전원이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개정안의 승인을 결정하다.

- '제 4 장 상설심의기구(신설) 제 21 조 상설심의기구' 관련 의견

- [기존 안]

- ① 아름다운가게의 운영상 중요한 사안을 적시에 결정하기 위하여 상설심의기구를 둔다.
- ② 상설심의기구는 이사장과 상임이사, 이사 2 인으로 구성한다.
- ③ 상설심의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규에서 정한다.

[수정 안]

- ① 아름다운가게의 운영상 중요한 사안을 적시에 결정하기 위하여 상설심의기구를 둔다. 중요한 사안은 내규에서 정한다.
- ② 상설심의기구는 이사장과 상임이사, 이사 2 인으로 구성한다.
- ③ 상설심의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규에서 정한다.

- 1 항 문구 중 '중요한 사안'을 설명할 수 있는 문구가 추가된 수정안을 포함하여 신설조항의 승인을 결정하다.

- '제 6 장 사무처 제 26 조 사무처의 설치 및 운영' 관련 의견

- [기존 안]

- ① 아름다운가게는 목적의 달성과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집행, 필요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.
- ② 사무처에는 필요한 간사를 둘 수 있다.
- ③ 사무처의 편제, 임무, 사무요원의 배치, 정수 등은 사무처에서 정한다.
- ④ 사무처는 사무처 운영에 관한 내규를 작성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.

[개정 안]

- ① 아름다운가게는 목적의 달성과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집행, 필요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.
- ② 사무처는 사업을 담당하는 사업처와 지원을 담당하는 지원처로 구성할 수 있다.

③ 각 처의 편제, 임무, 사무요원의 배치 등은 내규에 따른다.

- 개정안의 승인을 결정하다.

- '제 5 장 사무처 제 27 조 지역본부의 구성 및 운영' 관련 의견

- [기존 안] 아름다운가게는 각 광역시·도에 지역본부를 둘 수 있다.

[개정 안] 삭제

- 삭제하는 안으로 승인을 결정하다.

- '제 7 장 보칙 제 37 조 내규' 관련 의견

정관내 '내규'를 명시하는 조항을 유지해 둘 필요가 있으므로, 내규 조항 삭제안을 취소하고 기존 문구 현행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하다.

- '제 8 장 보칙 제 38 조 법인 정관의 변경' 관련 의견

- [기존 안] 아름다운가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한다.

[개정 안] ① 아름다운가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한다.

② 이사회는 정관개정을 위하여 임원들을 구성원으로 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 소 위원회는 이사회에 개정안을 제안한다.

③ 정관개정을 위한 소위원회에는 이사장과 상임이사, 간사이사를 포함시킨다.

④ 소위원회는 개정안을 준비함에 있어 아름다운가게 이사회, 간사협의회, 자원활동가들 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한다.

- 정관개정은 이사회 및 소위원회에서 진행함에 따라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의 승인을 결정하다.

[내규 개정안 주요 의견 및 논의결과]

- 내규 '제 3 장 사무처 구성 및 직제 제 19 조 (정의)' 관련 의견

문구 변경

[기존 안] ② (직위) 간사는 처장, 국장, 센터장, 팀장, 선임 등의 직위를 갖고, 이에 따라 단위별 책임을 부여할 수 있다.

[수정 안] ② (직위) 간사는 처장, 국장, 센터장, 팀장, 선임 등의 직위를 갖고, 이에 따라 단위별 책임을 갖는다.

- 정관내규개정위원회에서 심의한 별첨자료 내규개정안을 승인함.

[결정사항] 수정안 및 개정안 논의결과의 세부사항을 반영한 2022년 정관 및 내규의 모든 조항을 승인.

3. 보고 사항

- [보고 제 1 호] 나눔사업 주요 현황 보고
 - 회의 자료 참고

- [보고 제 2 호] 소위원회 진행 사항 보고
 - 회의자료 참고

- [보고 제 3 호] 홍보 진행사항 보고
 - 회의자료 참고

- [보고 제 4 호] 상반기 사업현황 보고
 - 회의자료 참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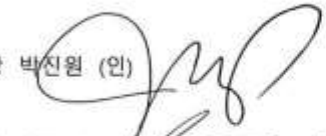
- [보고 제 5 호] 20주년 기념사업 진행 보고


- 회의자료 참고

4. 폐회

이상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보고를 접수 받았으며, 다음 100 차 회의를 2022 년 11 월 24 일 (목) 오후 4 시 회현본부에서 진행할 것을 정하고 의장 이사장이 폐회를 선언하다.

위 결정사항에 명확을 기하기 위하여 참석자 연서·날인 함

이사장 박진원 (인) 

이 사 장윤경 (인) 

이 사 이해옥 (인) 

이 사 문보경 (인) 

이 사 박세훈 (인) 


이 사 박현정 (인) 


이 사 이계양 (인)

이 사 이병남 (인)

이 사 김효진 (인)

이 사 임혜성 (인) 

이 사 정귀옥 (인) 

이 사 장승권 (인) 

감 사 조용준 (인)

감 사 최호윤 (인)